

www.acrc.go.kr

2019 각급기관 홍보담당관 청탁금지법 워크숍

2019. 12. 10(화)

서울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국민권익위원회

2019 각급기관 홍보담당관 청탁금지법 워크숍

▶ 추진배경

- 언론인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각급 기관 홍보담당관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법 준수 의식 강화 필요

▶ 행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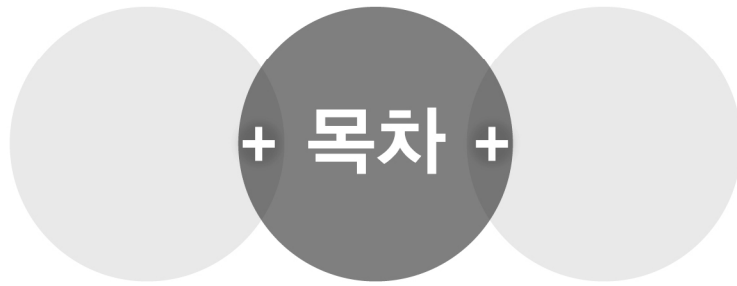
- 일 시 : '19. 12. 10.(화), ① 오전 10:00~12:00 ② 오후 14:00~16:00
- 장 소 : 서울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각급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국공립병원, 언론사) 청탁방지담당관과 홍보담당관 등 교육 참석 희망자
- 주요내용 : 법 주요 내용·언론 분야 사례, 제도 운영 현황·유의사항 설명, 질의응답을 통한 궁금증 해소, 기관별 시책 등 공유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10:00~10:05	14:00~14:05	5'	워크숍 개최
10:05~10:20	14:05~14:20	15'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현황, 향후 추진 과제
10:20~10:35	14:20~14:35	15'	후원·협찬 관련 유의사항, 최근 판례 설명
10:35~11:10	14:35~15:10	35'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관련 사례·판례
11:10~11:40	15:10~15:40	30'	질의사항 관련 답변
11:40~12:00	15:40~16:00	20'	의견 청취 및 폐회

▶ 행정사항

- 상시학습 : 참석자 2시간 인정
 - 대회의실 입구에 비치된 서명부에 서명한 것으로 참석 인정되며, 추후 각급기관 참석자 통보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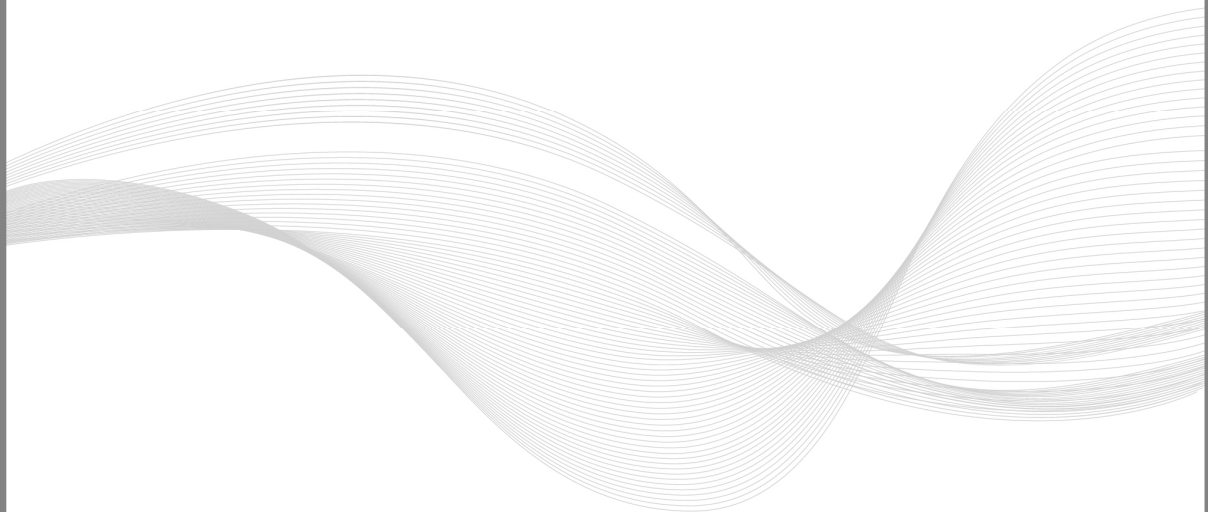


❖ 2020 청탁금지제도 주요 운영 방향1

❖ 후원·협찬 관련 유의사항, 최근 판례 설명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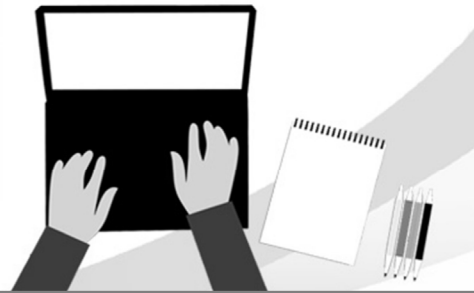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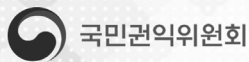
❖ 법 주요 내용 및 질의27

2020 청탁금지제도 주요 운영 방향



2019 각급기관 홍보담당관 청탁금지법 워크숍

2020 청탁금지제도 주요 운영 방향



I. 2019년 주요 성과

공직사회에서의 부정청탁·접대 등 금품수수 개선

공직자들의 청렴 실천

반부패의식 내재화

'18년 이후
위반신고 감소 추세

공직사회에서의 부정청탁·접대 등 금품수수 개선

〈각급 공공기관 신고 처리 현황('16.9.28.~'19.6월)〉

		'17년	'18년	'19년상
신고 접수	부정청탁	435	3,330	1,183
	금품수수	967	959	528
계		1,402	4,289	1,711

- 각급기관은 이러한 법 위반행위를 제재하여 비정상적 청탁·접대 감소 노력
- '19.상반기까지 과태료·형사처벌 181건, 수사·재판 진행중 346건

공직사회에서의 부정청탁·접대 등 금품수수 개선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품등 제공 관행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 통보

〈 주요 내용 〉

■ 지자체 주관 지역 축제 등 후원·협찬 (*19.7.)

행사 협찬 및 장학 기부금 수수 시 법적 요건 엄정 준수,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철저한 집행·사후관리 등

■ 주차편의 제공 (*19.9.)

방문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요금 감면, 과도한 재량 부여 규정 삭제 등

공직사회에서의 부정청탁·접대 등 금품수수 개선

· 각급기관들은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운영

청탁금지법 운영 사례집 제작

우수시책 발표(*19.9)

각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관련 시책들을 타 기관에 공유·확산

※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청탁금지법, 깨끗한동행’ (9.26.) 참고

기업 경영에의 영향 및 사회적 인식·관행 개선

· 기업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 중소기업 접대비 분석 결과, 불필요한 접대비를 줄이고 매출증대에 필요한 지출을 늘리는 등 합리적 소비 촉진 및 내부시스템 개선

(‘19.6월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 기업인들 70.7%가 법 시행으로 기업문화가 변화하고 경영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답변

(‘18년 국민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기업 경영에의 영향 및 사회적 인식·관행 개선

· 청렴에 대한 감수성이 증대하면서 우리사회에 각자내기가 확산 중

〈각자내기에 대한 인식(%)〉

(‘19.8월, 한국리서치)

조사 항목	일반국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교원	언론인
더치페이 하는 것이 편해졌다	71.3	75.4	74	68.6	44.6
상대방의 더치페이 제안을 이해하게 되었다	84.7	92.2	92.3	84.3	70.3

· 국민·공무원 10명 중 8~9명이 부탁·접대 관행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

– 일반국민 79.5%, 공무원 87.2%, 교원 83.5%, 언론인 78.7% (‘19.8월, 한국리서치)

청탁금지제도 운영 현황 및 관행 변화의 대국민 공유

· 법 적용 대상별·기관 특성별 맞춤형 교육 · 홍보 확대

-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간담회, 찾아가는 교육
- 설·추석 명절 대비, 판례 관련 카드뉴스·영상 제작
- 주요 판례집 발간, 해설집 · 매뉴얼 개정 등



자율적 법 준수 노력 촉진

모든 국민이 수범자라는 인식 확산

II. 2020년 업무 추진방향

추진 방향

잘못된 관행 개선

- 취약요인 발굴·개선방안 마련
- 연구용역 방향 전환을 통한 개선 필요 분야 도출

법 운영 지원 강화

- 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 파급력 있는 시책 공유, 보상·포상 사례 추천
- 유권해석과 신고사건의 유기적 처리

대국민 인식 확산

- 제도 운영 역량 강화 워크숍
- 언론사 등 법 준수 의식 강화
- 친숙하게 다가가는 교육·홍보

제도의 지속적 보완

- 시행령 개정 등 법령 보완
- 부정청탁 규제 범위 확대 노력 지속

추진과제 1. 잘못된 관행의 근본적인 개선

· 청탁·부패신고, 국민청원 등을 통한 취약요인 발굴·개선

- 접수 신고·민원 등을 통한 취약요인 포착, 법령·규정 등 개선
-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관행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사각지대 해소

· 예시

- 공직자등,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
-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난 특혜 제공
- 채용비리

추진과제 2. 각급기관의 엄정한 법 운영 지원

· 각급기관 신고처리 등 제도운영 현황 파악, 현지점검

– 반기별로 조사, 부적절 처리 사례 발생 기관 현지점검 실시

· 제도개선 이행상황 점검 및 부진기관 적극 독려

– 제도운영 현황 실태조사,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 점검 및 종합대책(18.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후원·협찬(19.7), 주차편의 제공(19.9) 관련 제도개선 이행상황 모니터링

※ 관계기관 미이행 시 '20년 시책평가에서 감점하는 방안 검토 중

추진과제 2. 각급기관의 엄정한 법 운영 지원

·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우수시책 공유

– 기관 차원에 머물러있는 효과성·파급성이 큰 시책을 발굴하여 확산

※ 부패방지시책평가에 제출된 공공기관의 제도개선 사례 중 청탁금지제도 관련 사례를 모아 자료집으로 출간·확산(20.1월)

· 위반신고 보상·포상 사례 발굴·추천

– 각급기관 제도운영 현황 실태조사, 권익위 신고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포상 사례 발굴·추천

※ 보상·포상 추천 실적 부패방지시책평가 가점 지표 포함 검토

추진과제 2. 각급기관의 엄정한 법 운영 지원

· 유권해석 및 신고사건의 유기적 처리

- 정립된 해석기준과 법리를 실제 위반신고 사건 처리에 적극 활용
 - 신고사건 처리로 국민의 법 감정과 현실에 맞게 해석기준을 정비·공유
- ※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보완(4월) 및 확산(연중)

추진과제 3. 공직자등을 비롯한 대국민 인식 확산

· 제도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 중점 추진 방향, 신고처리·조사 방법, 사전 질의 취합을 통한 질의 응답 등 제도 운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워크숍·간담회 개최(연 9회)

〈연중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개최 계획(안)〉

1~3월	4~6월	7~8월	9~12월
중앙부처·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 법 주요내용 · 신고사건 분석 · 판례 분석 · 시책평가 지표 설명	지방의회·지자체 대상 · 법 주요내용 · 판례 분석 · 후원·협찬 제도개선 교육계·언론계 대상 · 판례 분석 · 주요사례 유권해석	권역별(전 기관) 대상 · 신고처리·조사 방법 · 신고자 보호·보상 · 판례 분석 · 주요사례 유권해석	시행 N년 소통 워크숍 · 질의응답 · 기관 사례발표·토론

추진과제 3. 공직자등을 비롯한 대국민 인식 확산

· 언론사, 기업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법 준수 의식 강화

–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언론분야 특화 콘텐츠 개발, 찾아가는 교육 추진

〈민간기업 청탁금지법 준수 노력 지원〉

- (협조체계) 공공사업 참여 민간기업(협력회사·자회사 등)의 법 준수 노력 지속적 지원
 - (특화 콘텐츠) 수급업체-품질관리자, 시공사-감리업자 등 업무단계별 발생 가능한 부정청탁,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사례, 신고방법 등 전달
 - (찾아가는 교육) 공기업 본사에서부터 지역 본부, 협력·자회사 및 일선 공사현장까지 찾아가는 교육 지원
- ※ '19.6월 5개 공기업과 MOU 체결 이후 LH 현장소장, 도로공사 신입직원 대상 등 총 7회의 교육 실시

추진과제 3. 공직자등을 비롯한 대국민 인식 확산

·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모니터링,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 일부 업종에 대한 실질적 영향 주기적 모니터링, 관계부처 의견 청취
 - 법 핵심내용, 주요 사례·판례를 카드뉴스, 웹툰, 애니메이션 등의 방식으로 제작·배포하여 친숙한 생활 속 규범으로 안착
 - 지역사회, 미래 청렴사회 근간이 될 세대를 위한 '청탁금지법 쉽게 알기,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키기' 등 교육 확대
- ※ 청렴연수원 학생 대상 프로그램,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등 지원

· 홍보콘텐츠, 해설집·매뉴얼 등 자료집은 권익위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으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이 있는 기관은 국민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044-200-7710)으로 연락

추진과제 4. 청탁금지제도의 지속적인 보완

- 제도 운영 합리성 제고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법령 보완
 - 국회 계류 중인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 주요 청탁금지법 개정안 추진 현황 〉

발의	시기	주요내용	진행
의원발의안	'18.11월	과태료를 징계부가금보다 우선 부과	법사위(소위)
	'19.1월	공직자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정무위
	'19.2월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한 제재 신설	정무위
	'19.9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정무위(소위)
	'19.9월	교도관의 업무를 법 적용대상 직무로 추가	정무위(소위)

추진과제 4. 청탁금지제도의 지속적인 보완

- 제도 운영 합리성 제고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법령 보완
 - 법률 개정(예: 외부강의 신고체계 조정*) 또는 원활한 제도 운영(예: 각급기관별 인도받은 금품의 처리근거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 ※ 외부강의 등 관련 ①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가능, ② 사례금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시행('20.05.27.)

추진과제 4. 청탁금지제도의 지속적인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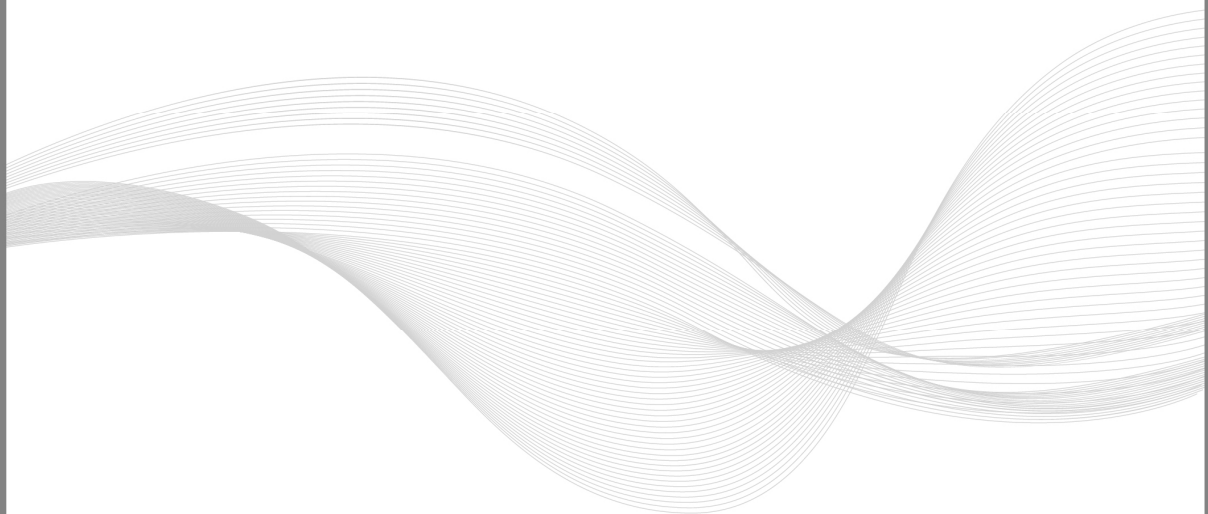
· 부정청탁 규제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 지속

- 사회적으로 ‘공정’을 훼손하지만 부정청탁(법 제5조제1항각호)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사례를 도출해 대상직무로 추가
-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판례 등을 모니터링 하여 발굴

※ 민간부문의 자유롭고 공정한 활동의 보장을 위해 공직자등의 민간에 대한 채용청탁 등 부정청탁 금지 규정 신설(의원발의안 정무위 계류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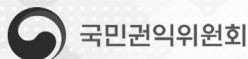
※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교도관의 업무(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 처우 등)를 대상직무로 추가하여 법의 규범력을 제고(의원발의안 정무위 계류중)

**후원·협찬 관련 유의사항,
최근 판례 설명**



2019 각급기관 홍보담당관 청탁금지법 워크숍

후원·협찬 관련 유의사항, 최근 결정 판례 설명



협찬 관련 실태조사|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지역축제 운영과 관련한 관행적인 기부·협찬금품 모집에 대해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보도, 관련 유권해석 질의 다수

- 시가 추진하는 행사마다 논란이 된 협찬금은 지역발전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라는 분에도 기업은 인허가권을 가진 시 눈치를 안 볼 수 없음
- 군체육회(회장 군수)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에서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경품 등을 협찬받는 경우 법 저촉 여부

- 공공기관 협찬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의 수단으로 관리 필요

◆ 추진 경과

- '18년9월부터 '19년5월까지 108개 지자체 조사, 31개 축제·행사 현지 출장 등을 통한 중점조사 실시
- '19.7.18.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대책 통보

협찬 관련 실태조사|관계법령

◆ 청탁금지법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 없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됨(제8조)
- 공직자등이 후원·협찬을 요구하거나 관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 될 수 있음(권익위 유권해석)
- 다만, 다른 법령·기준이 있는 경우(8·3·8),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춘 정당한 권원(8·3·3)이 있는 경우 예외적 수수 가능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상호간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협찬 관련 실태조사|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 국가나 지자체 및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 불가
 -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예외적으로 '접수'는 허용(제5조)
- ☞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 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제2조)
-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혹은 시도지사 등에게 모집등록을 하여야 하고(제4조), 모집자는 기부금품 출연을 강요해서는 아니됨(제6조 제1항)

협찬 관련 실태조사|실태 및 문제점

1. 법이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는 협찬 빈발

- 일부 지역축제 추진 시 협찬 요청 문서, 전화 등을 통한 협찬 모집행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없이 협찬금품을 접수하는 사례 존재
- 기부심사위원회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사례 중 협찬계약 체결 등을 통해 정당한 권원을 확보한 사례는 소수에 불과

2.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수수행위 존재

- 행사 전후 지자체 금고은행 및 인허가, 공사·용역계약, 보조금 지급 관계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협찬금품을 수수한 경우 다수
-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일 수 있고, 자발적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충돌 소지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

협찬 관련 실태조사|실태 및 문제점

3. 기부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 기부심사위원회 없이 협찬 및 기부금 수수하거나 심사위를 거치는 경우에도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경우가 대부분
- 심의 항목·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나 지침이 없고, 일부 지자체는 기부심사위원회 미구성

4. 협찬금품의 정산 및 사후관리 미흡

- 축제 결과보고서, 정산서 등에서 협찬 금품의 접수 사실 및 사용 내역 등 관리 허술
- 회계관리 부실로 인하여 협찬 금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려움

협찬 관련 실태조사|개선대책

◆ 협찬금품 수수 시 법적 요건 엄정 준수

- 다른 법령(기부금품법) 준수 : 자발적 기탁,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 청탁금지법상 정당한 권원 확보 : 절차적 요건, 실체적 요건 준수
- 청탁금지법(부패방지)교육을 통해 조직 구성원에 대한 교육 강화

◆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 서면심의 원칙적 금지, 직무관련성이 밀접한 경우 심의를 통해 접수 제한
- 이해충돌 상황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강요·모집행위 여부, 직무관련성 여부 등)
- 민간위원 과반수 참여,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심의의 객관성 확보 등

◆ 철저한 집행·사후 관리

- 협찬금품 제공자, 집행내역, 집행결과 등의 정산 및 그 내용의 홈페이지 공개

※ 내년 1월 각급기관 제도운영 현황 조사시 점검 예정

협찬 관련 실태조사|사례연구

◆ 가상의 사례

A 기관은 국제행사를 개최·주관하면서 관련 업계 공공기관과 민간회사들에게 협찬을 요청해, 공공기관 B, C로부터 각 천만원 상당의 홍보물품을, 민간회사 D, E로부터 각 천만원 상당의 홍보물품을 받음

협찬 관련 실태조사|사례연구

◆ 위 사례 협찬은 청탁금지법 위반(?)

-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허용 여부(법 제8조 제3항 제8호)
 - 강요 등의 모집행위가 있었다면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법 위반 소지”
 - 기부금품법 제5조에 따라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 심의를 거친 경우가 아니면 “법 위반 소지”
-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춘 정당한 권원 여부(법 제8조 제3항 제3호)
 -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없다면 “법 위반 소지”

청탁금지법 최근 판례 분석|1. 금품등 수수

◆ 인정사실

- 언론사직원 A는 대표 B와 공모 등을 통해 언론사 사정이 어렵다며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여 민간회사 2곳으로부터 각 수백만원을 받아 언론사 계좌 입금 및 대표 B에게 전달
- 언론사 대표 B는 언론사의 사정이 어렵다며 민간회사 수 곳으로부터 합계 수천만원을 언론사 계좌로 입금 받아 언론사 운영비로 사용

청탁금지법 최근 판례 분석|1.금품등 수수

◆ 1심 판결 : 청탁금지법 위반죄 무죄

- 법상 수수금지 주체는 공직자등이므로 언론사 등 공공기관은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처벌대상이 아님
- 금품등을 받은 주체가 언론사인 경우 그 과정에서 금품등을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요구, 약속한 사람이 그 언론사의 대표자 등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등은 처벌 불가

청탁금지법 최근 판례 분석|1.금품등 수수

◆ 2심 판결 :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A 징역 6월, B 징역 1년)

※ 상고 기각으로 형 확정

- 언론사 대표자나 임직원이 실질적으로 금품을 받으면서 형식적으로 언론사가 수수하는 외관을 형성하는 경우나, 대표자와 임직원이 언론사의 운영비 등을 부담하고 있어 언론사의 금품 수수로 인하여 대표자와 임직원이 언론사 운영비 지출이 그만큼 면하게 되는 경우 사회통념상 대표자와 임직원이 금품등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대법원 2017도12129 배임죄 관련 판결 원용)
- 광고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그들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제공하였다는 제공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권원(광고 계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탁금지법 최근 판례 분석| 1. 금품등 수수

◆ 시사점

- 1인이 운영하는 등 특히 소규모 언론사의 경우 법인 계좌 등을 통해 언론사 명의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금품을 수령한 대표자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음
- 수수 금품이 광고 영업을 통한 자금 모집에 의하고, 명목상 광고비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강요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공한 경우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청탁금지법 최근 판례 분석| 2. 부정청탁

◆ 인정사실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중령 A로부터 특정부대 대대장으로 보직을 희망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속부관인 B에게 A의 보직에 관하여 알아 볼 것을 지시하였고, B는 인사 참모부 보임과장 E에게 A가 희망하는 부대 대대장으로 보직하도록 지시하여 A는 해당 부대 대대장으로 인사 발령

청탁금지법 최근 판례 분석|2. 부정청탁

◆ 1심·2심 판결 : 청탁금지법 위반죄 유죄(벌금 400백만원)

※ 상고 기각으로 형 확정

- 부대관리훈령 등에서 지휘계통이나 상담관을 통한 고충처리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A가 친분에 기하여 최상급 지휘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정당한 고충처리 절차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움

⇒ 부대관리훈령등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인사 관련 부정청탁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 피고인은 평소 어떤 것을 검토해봐라, 알아봐라는 식으로 업무 지시를 내린다는 취지의 B의 진술 등을 피고인은 부정청탁에 따라 A가 희망하는 보직으로 부대 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급자들에게 지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법 제6조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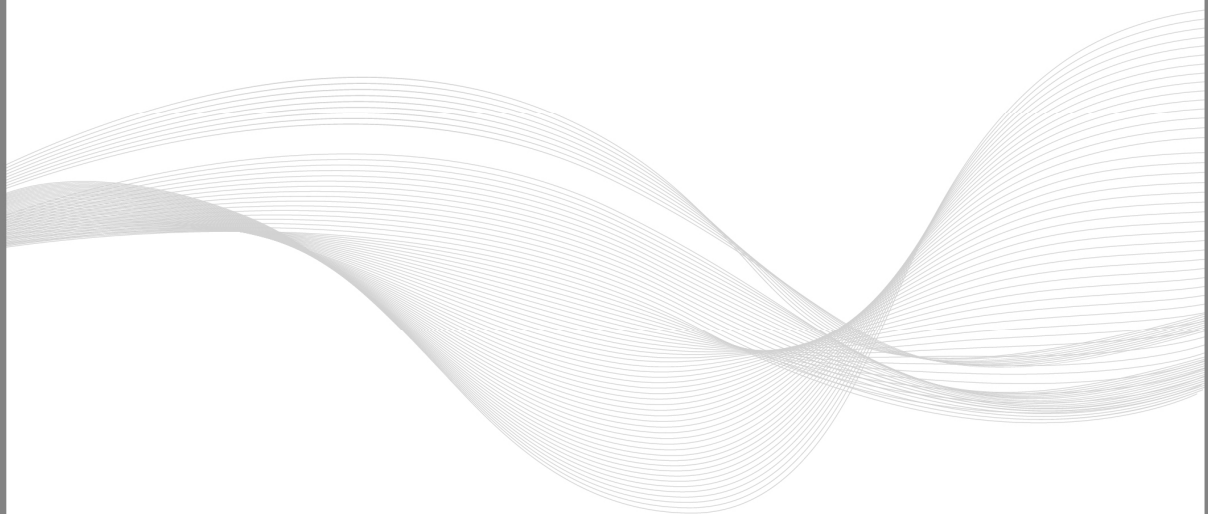
청탁금지법 최근 판례 분석|2. 부정청탁

◆ 시사점

- 복무규정 등 내부규정도 ‘법령’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인적인 친분 등을 이용해 최상급자에게 사적으로 희망 부서 배치 등을 부탁하는 경우 부정한 인사 청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
- 상관이 외관상 구체적인 명령이나 지시 없이 검토해 봐라, 알아봐라는 식으로 말했다하더라도 하급자가 특정 지시로 받아 들일 사정이 있다면 실질적인 명령이나 지시가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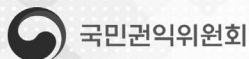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 주요 내용 및 질의



2019 각급기관 홍보담당관 청탁금지법 워크숍

법 주요 내용 및 질의



질문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을 제재하기 위한 법이다?

공직자등이 어떠한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게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규범입니다.

제정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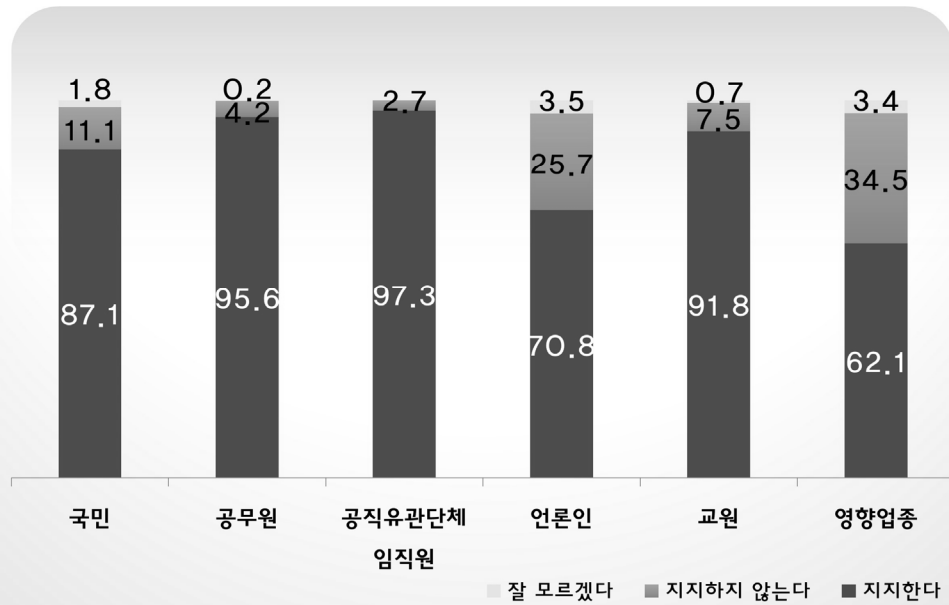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19.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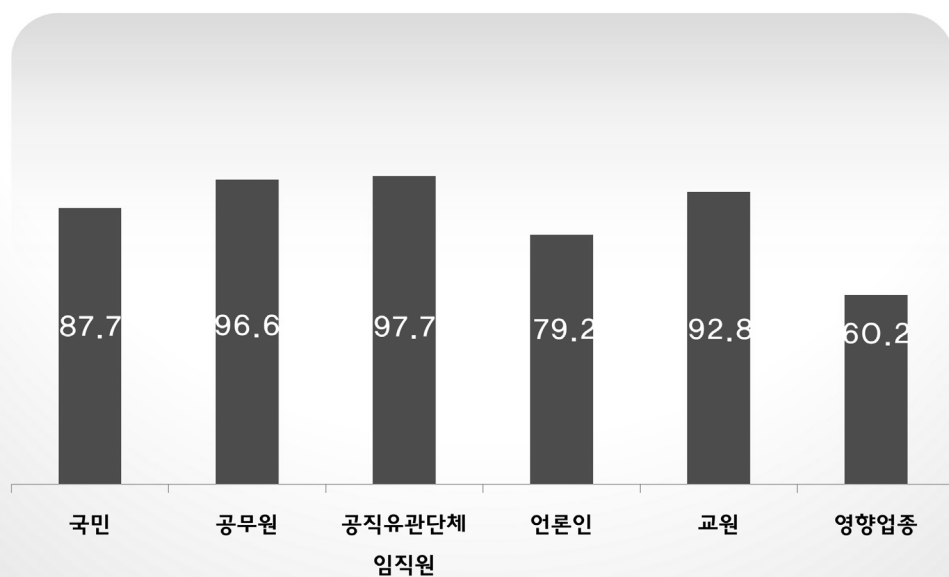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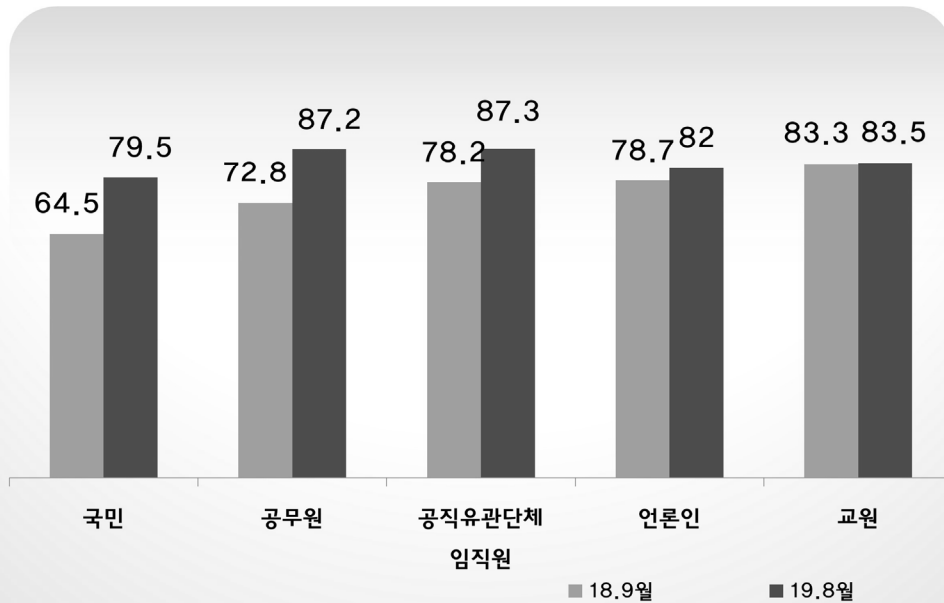
“청탁금지법 시행을 지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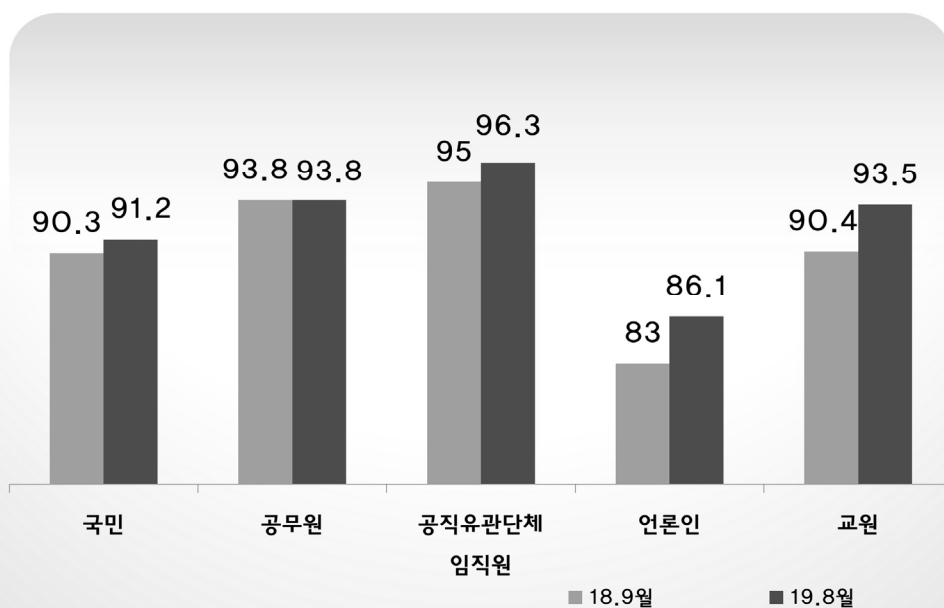
“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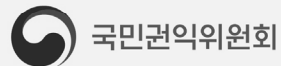
“법 시행 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탁, 접대, 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



인식도 조사 | 사회생활, 업무수행에의 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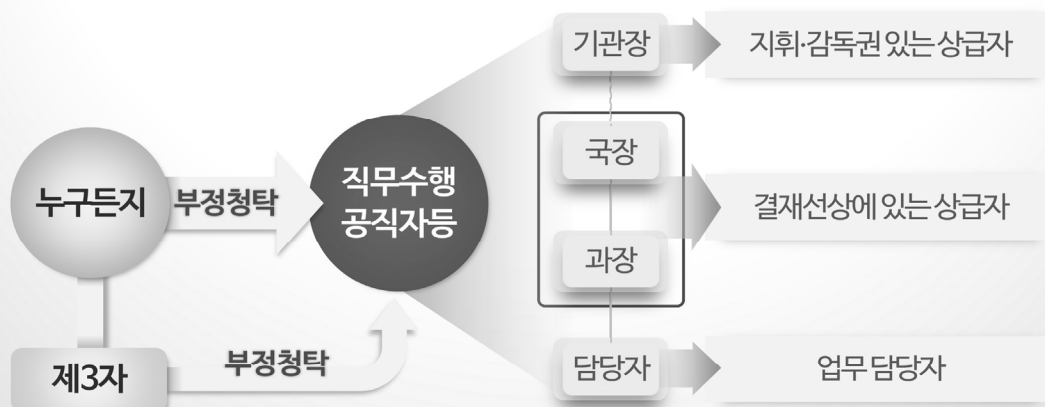


법 주요 내용 및 관련 사례



부정청탁금지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14가지 대상직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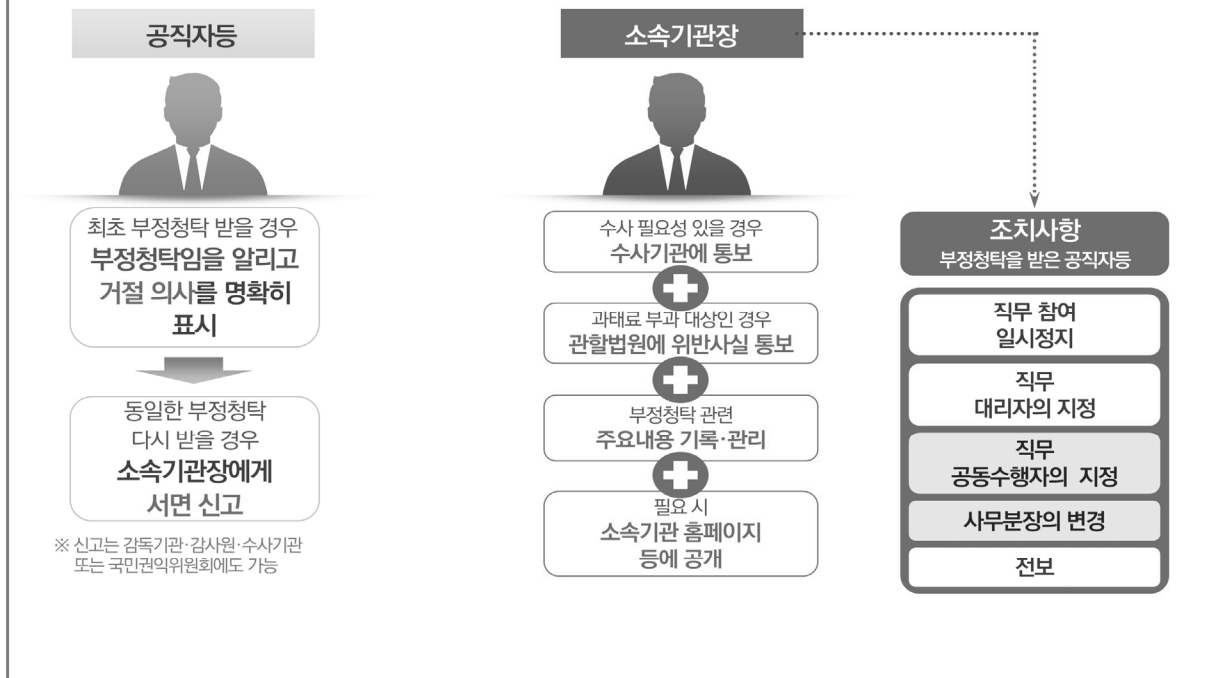
부정청탁 금지 | 14가지 대상직무

- | | | | |
|----|---------------------------------|----|-----------------------------|
| 1 | 인가·허가 등 처리 | 2 |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 |
| 3 |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 4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 5 |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 6 | 입찰·경매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
| 7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 8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등에 개입 |
| 9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사용·수익·점유 등 | 10 |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
| 11 |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12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
| 13 |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등 | 14 |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

부정청탁 금지 | 예외사유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민원 전달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5. 사실확인, 증명 등 요구
6. 법령 또는 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7.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 및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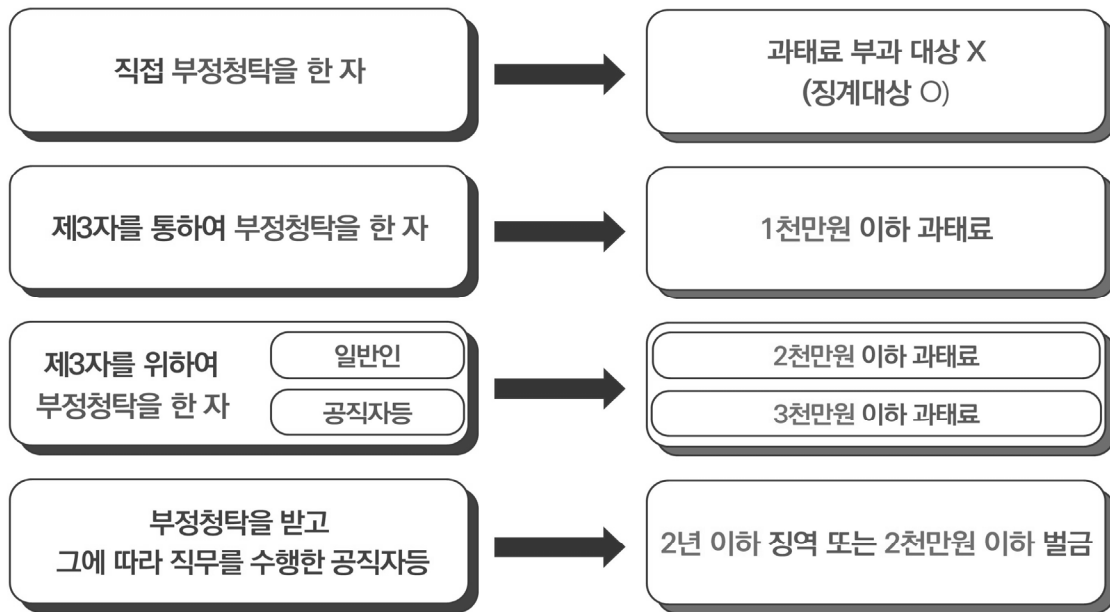
유형별 분석 | 부정청탁 금지

- (직무 배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직무 참여를 일시정지하는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례

관련 사례

개 요	조치 내용
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기간제 교원의 청탁을 받고 교장이 채용공고문을 수정하여 게재	직무 대리자 지정
공직유관단체 관리·감독 담당 공무원이 2차례에 걸쳐 해당 공직유관단체 인사담당자에게 특정인의 승진을 청탁	직무 참여 일시 중지 및 전보
공직유관단체 임원이 내부 직원에게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 심사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특정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청탁	전보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



참고 판례

인정 사실

위반자는 '18년도 B시 산불감시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채용담당자에게 채용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 통화

판 단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 위반으로 위반자의 직업, 산불감시원의 보수,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5백만원 부과

부정청탁 금지 | 14가지 대상직무

- | | | | |
|----|---------------------------------|----|-----------------------------|
| 1 | 인가·허가 등 처리 | 2 |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 |
| 3 |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 4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 5 |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 6 | 입찰·경매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
| 7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 8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등에 개입 |
| 9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사용·수익·점유 등 | 10 |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
| 11 |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12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
| 13 |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등 | 14 |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

참고 사례

신고 내용

- 지방의원이 교육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수련원 콘도시설을 사용한 사례
- 중학교 행정실장이 교구업체 청탁에 의해 허위 비교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으로 물품선정

권익위 판단

경찰청 이첩, 경찰청 조사 후 기소의견 송치

부정청탁 금지 | 14가지 대상직무

- | | | | |
|----|---------------------------------|----|-----------------------------|
| 1 | 인가·허가 등 처리 | 2 |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 |
| 3 |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 4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 5 |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 6 | 입찰·경매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
| 7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 8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등에 개입 |
| 9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사용·수익·점유 등 | 10 |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
| 11 |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12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
| 13 |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등 | 14 |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

참고 사례

신고 내용

'17년 국공립병원 군의관이 병원에 근무하다 전역한 군의관에게 진료 및 CT검사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진료를 받도록 한 의혹

처리 결과

전역군의관은 진료대상자가 아님에도 타인 명의로 진료 접수, 그 사실을 알고도 군의관이 검사 및 CT를 지시하고, 별도 접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첩, 기소유예 판단

질문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상급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하여 업무를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급자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하급자도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거절하지 않고 지시에 따라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유형별 분석 | 부정청탁 금지

• (처리 현황) 신고 접수 4,946건, 과태료 부과 요청 또는 수사의뢰 90건, 제재 확정 28건

관련 사례

개요	경찰채용시험을 치른 자녀가 경찰인 부모를 통해 시험 감독자 2인에 답안지 보완 기회를 청탁하여 시험장에 재입실 후 답안지를 새로 작성
제재	자녀 : 과태료 300만원, 부모 : 과태료 800만원, 시험감독자 2인 : 벌금 각 200만원
개요	최상급 공직자A가 공직자B로부터 특정 보직을 희망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하급자들을 통해 해당 보직에 관하여 알아볼 것을 지시한 후 인사 발령
제재	최상급 공직자 : 벌금 400만원
개요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학부모의 입학 청탁을 받고 특정 아동의 정원 외 입학을 실시
제재	학부모 : 과태료 500만원, 교장 : 벌금 700만원, 교감 : 벌금 500만원

사전질의

☑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직무관련자 및 직접적 이해 관계 개념의 차이 및 금품등 수수 제한 여부의 차이는?

☑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과 같은조제3항제2호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음식물 등 제공은 어떤 상황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금품등 수수 금지



직무 관련 여부 관계없이
받거나 요구·약속 금지

직무와 관련하여
받거나 요구·약속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 청탁금지법 판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과2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 사건에서, 공무원인 위반자 조OO 등은 OO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드라마 ‘OO’의 공연 제작사인 도OO의 대표이사인 윤OO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고, 위반자 윤OO은 이를 제공한 것으로, 위반자들의 지위, 인적관계, 업무내용, 제공시점 등에 비추어 이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금품등 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 청탁금지법 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과187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판례는 뇌물죄의 경우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고 하는 바,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뇌물죄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위 실시 법리는 청탁 금지법의 직무관련성을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금품등 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 청탁금지법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6과527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중대한 목적을 위하여 형사법상의 뇌물죄로 포섭할 수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규율하고자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나 각 금지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직무관련성을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좁게 인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거나 법적 제한이 잠탈될 우려가 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이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 업체의 제품, 기술력 등이 될 것이다)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등의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금품등 수수 금지 | 예외사유

- 1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 3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하는 금품등
- 4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의 기준, 장기적·지속적 친분에 따른 금품등
- 6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7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등
- 8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커피전문점 기프티콘이나 외식상품권이
청탁금지법 상 선물에 해당된다?

아닙니다. 기프티콘이나 외식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청탁금지법이 의미하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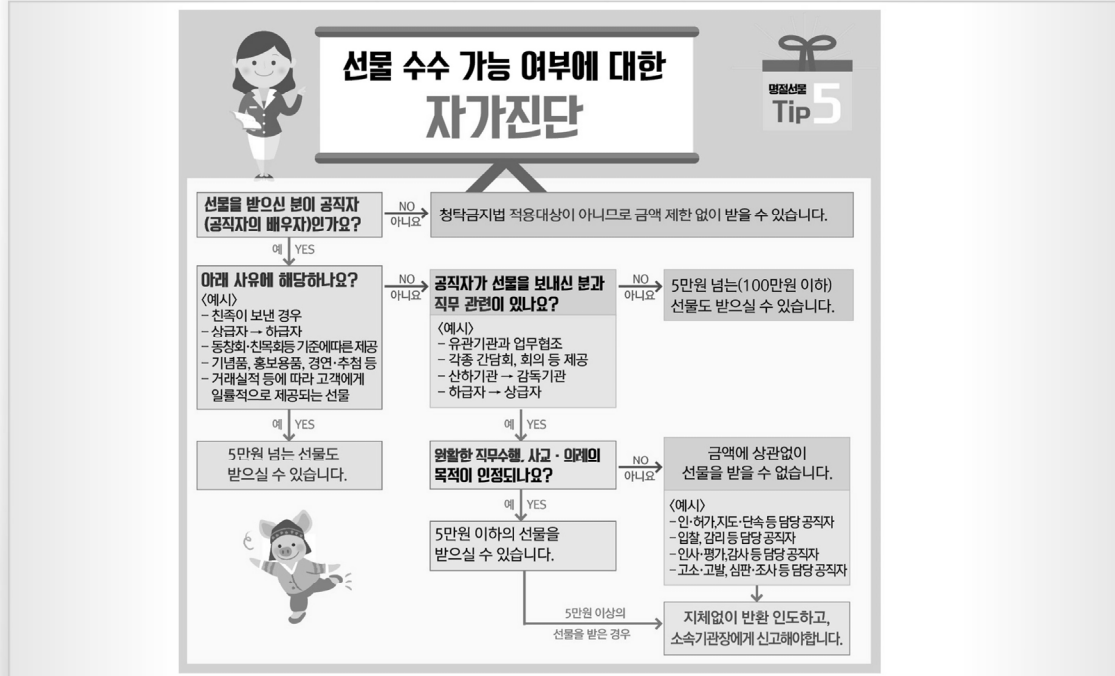
인정 사실

○○지원 관내 변호사가 ○○지원 소속 판사가 가족과 함께 식사한
식사대금 2만8천원을 몰래 지불한 사례

판 단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 11만원(4배) 부과

금품등 수수 금지 | 확인사항



참고 판례

인정 사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1.3만원 상당의 디저트 세트 모바일 기프티콘을 선물한 사례

판 단

학부모가 고등학교 교직원인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위반으로 과태료 3만원(약 2배) 부과

참고 판례

인정 사실

고소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을 통해 고소사건 담당경찰관에게 4만5천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전달한 사례

판 단

제공자에 과태료 2배(9만원) 부과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의 판단기준 제시

참고 판례

인정 사실

○○무기 계약직 전환심사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심사를 거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10월1일)된 직원으로부터 10월18일에 2.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받은 사례

판 단

제공자가 전환심사를 거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당시 위원이었던 K도 함께 식사를 제공받은 점, 제공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념으로 식사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위반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참고 판례

인정 사실

지역사무소 소장이 위원회 위원장, 각 도지사 및 사무국장 등 총 11명에게 설 선물로 1.5만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제공

판 단

소장은 위원장과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제공자와 위원회·그 구성원의 관계, 제공일 한 달여 전 위원장으로부터 회계처리 부적정, 근무상황 관리 미흡에 관한 주의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약 2배) 부과

참고 판례

인정 사실

위반자들은 시의회 의원 등의 공직자들과 J축협 임직원들 22명으로서 함께 63만3천원 상당의 식사

판 단

방에서는 의원들과 조합장 및 간부 16명 : 54만 1천원(33,812원)
홀에서는 의원들 수행원과 축협 팀장 등 6명 : 9만 2천원

참고 판례

인정사실

공장 관리부장이 감독·점검기관의 장에게 산업안전보건 등 감독·점검 및 처분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51만8천원 상당의 식사, 골프를 제공

판 단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약 3배) 부과

참고 판례

인정사실

월간지를 발행하는 업체 직원이 공공기관의 홍보실 광고업무 담당자와 광고게재 관련 면담 후 광고업무 담당자 앞으로 연극 초대관람권 6매(24만원 상당)을 우편으로 송부

판 단

직무와 관련한 금품 제공, 광고게재를 청탁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졌으며, 관람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태료 48만원 부과

질문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친구, 이웃,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명절 선물을 주거나 식사대접을 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상한액과 관계없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는 금액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사이에 주고받는 명절 선물이나 식사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아닙니다.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사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이 없으므로 상한액을 넘어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는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금품등 수수 금지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과태료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 직무 관련 1회 100만원 이하 수수 공직자등과 제공자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회 100만원 초과 수수 공직자등과 제공자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인도한 경우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금품등 수수 금지 | 언론기사

東亞日報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A12면 사회

‘경찰총장’ 총경, 결국 청탁금지법도 무혐의?

경찰은 A 총경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계속해 왔지만 이마저도 처벌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을 때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A 총경이 골프, 식사 접대 등을 받은 혐의액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 분석 | 금품등 수수 금지

- (처리 현황) 신고 접수 2,352 건, 과태료 부과 요청 또는 수사의뢰 351건, 제재* 확정 273건

*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부가금

관련 사례

개요	언론사 직원 A가 대표 B와 공모하여 민간회사 2곳으로부터 880만원 수수, 대표 B는 민간회사 등 19곳으로부터 5,960만원을 수수하여 언론사 운영비로 사용
제재	언론사 대표 : 징역 1년 및 6,840만원 추징, 임직원 : 징역 6월
개요	공직유관단체로부터 취업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센터의 직원이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한 취업사업 총괄 공직자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
제재	제공자 : 과태료 2배 (10만원)

양벌규정

- 종업원 등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면책

기업의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노력이 형벌의 양형이나 과태료 가액 산정 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청렴성 확보장치로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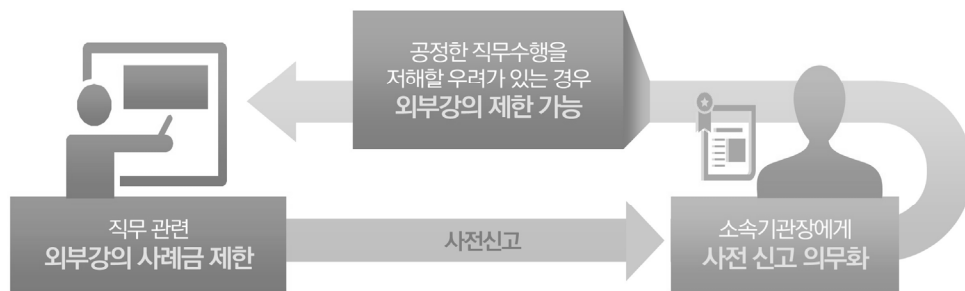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 직무 관련 외부강의시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신고 의무화 → 사전 신고 의무 불이행시 징계처분
※ '20.5.27.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대해 사후신고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 시행 예정
- 외부강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 기준금액 초과 사례금 수수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 지체 없이 반환
→ 신고 및 반환 조치 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부강의등 | 사례금 상한액

- 초과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의무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구분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1시간 상한액	100만원	40만원 (※ 사례금 총액 한도 : 1시간 초과 시 150%까지 수수 가능)

유형별 분석 | 외부강의등

- (처리 현황) 신고 접수 15,347건, 과태료 재판중 2건,
과태료 부과 5건

관련 사례

개 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16.9월~'17.9월 중 29회에 걸쳐 1천740만원의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하지 않음	과태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40만원의 사례금을 초과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하지 않음	과태료

사전질의

☑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범주를 파악하는 기준(예를 들어, 국공립 학교 출강 시 신고대상인지 여부)?

☑ 휴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되는지?

사전질의

☑ 외부강의등에 따라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인지?

☑ 강의등의 일자가 같은 날에 2회 강의등을 한 경우 사례금 지급 대상인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청탁방지담당관

교육·상담

신고 접수·조사 등 처리

소속기관장 위반행위 처리

제도 운영 현황 |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현황

· (지정 현황)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지정 (99.8%)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현황

기관유형	조사대상 기관 수	담당관 지정기관	미지정 기관(지정률)
헌법기관	5	5	0(100%)
중앙행정기관	53	53	0(100%)
지방자치단체 (지방 교육청 포함)	260	260	0(100%)
공직유관단체	1,141	1,138	3(99.7%)
학교·학교법인	19,863	19,816	47(99.8%)
계	21,322	21,272	50(99.8%)



사전질의

- ☑ 거래되는 금품은 없으나, 상급자 또는 상위 기관에서 특정 매체 지정 광고 또는 특집 기사를 지시하였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
- ☑ 기관명 또는 기관 CI 노출 시 예산이 집행되는 특집기사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근 광고성 기사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청탁금지법상 문제는 없는지?

사전질의

☑ 언론 홍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고자 함. 오랜 경력의 해당 분야 기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회의 후 식사 제공 및 자문료 지급이 가능한지?

☑ 문화예술기관의 경우 취재에 따른 공연이나 전시 티켓 요청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어떠한 범위에서 제공이 가능한지?

사전질의

☑ 비영리 재단법인의 비상임 이사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협찬을 받을 때, 청탁금지법상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 기관 행사 개최 시 기업 협찬금을 받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실제 사례들 제시 요청

사전질의

☑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시 식사 및 기념품 제공 가능 여부

☑ 지방자치단체 출입기자대상 정기적 업무 보고회 개최 후 식사 제공 가능한지

사전질의

☑ 출입기자단 없이 관리 매체만 있을 경우, 기자간담회 진행 시 어디까지 공지해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 식사를 했는데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전질의

☑ 담당기자와의 점심일정과 보도자료 배포 일정이 동일할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음식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 대외홍보, 행사 진행을 위한 기념품 상한액 제한이 있는지? 외부 또는 해외귀빈에게는 어느정도 고가의 기념품이 필요한데, 이때 에도 상한액이 있는지?

사전질의

☑ 기자를 만나 식사를 하고 회사 기념품을 제공할 경우, 식사와 기념품을 합쳐서 3만원 이내로 보아야 하는지? 별도로 볼 수 있는지?

☑ 판촉업체에서 구매 이력이 있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사은품 (도넛, 쿠키 등) 증정하는 경우

사전질의

☑ 워크숍을 위하여 견적을 문의하였던 호텔에서 홍보용 물티슈를 증정하는 경우

☑ 급여 통장 및 업무 관련 은행에서 연말연시에 홍보용 달력, 칫솔, 비누세트 등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질의

☑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제공된 물건을 반송, 거절 또는 신고를 하였을 때, 금품을 제공한 기업 측에 불이익이 있는지?

사전질의

☑ 여행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해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숙박, 교통, 식사 등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기사로 보도한다면 청탁금지법에 관련되는 사항인지?

☑ 해외 팸투어(현장취재)와 관련하여, 언론사 전체가 아닌 특정 매체 2~3개를 섭외하여 하는 경우, 가능한지?

사전질의

☑ 팸투어를 위한 공지는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는지, 각 언론사에 보내야 하는지, 생략을 해도 되는지?

☑ 특정사례) 아카데미 프로그램 참가기자 5~6명 선정, 해외 현장 취재기자 4~6명 선정, 국제대회 취재기자 3~4명 선정 및 지원(협회를 통해)이 가능한지?

사전질의

- ☑ 총회 취재를 위해 출장을 가는 기자의 숙박비, 일비, 식비 지원 가능 여부 (관련 문서번호 명시)



우리의 미래는 **인맥**이라는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라 **신뢰**라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되어야...



청렴한 대한민국

생활 속 규범 청탁금지법을 통해
국민, 공직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Memo



Memo



Memo

